

아파트 대피시설 인정서

- 인정번호 : 제9호
- 상품명 : 레스큐 레일(rescue rail)
- 대피시설 형식 : 탈출형 대피시설
- 인정업체 및 대표자 : 레스큐레일(주)(대표자 : 윤현지)
- 공장소재지 :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191-4
- 유효기간 : 2023년 6월 22일까지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대피시설을 인정합니다.

2020년 7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첨부서류 : 1. 인정조건 1부.
2. 설계도서 1식. 끝.

아파트 대피시설 인정 조건

아파트 대피시설을 인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피시설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

가. 「아파트 대피시설 성능 인정 등에 관한 지침」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인정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

나. 유지관리 방안에 따라 연 1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

다. 시공 시 구조감리 확인을 받고, 기존 난간에 설치 시 구조계산을 재설시할 것. 끝.